

과천시건강가정.다문화가족지원센터

아이돌봄활동가 모집 공고

과천시건강가정.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1차 아이돌봄활동가를 모집 공고 합니다.

1. 모집분야 및 인원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모집 부서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모집 분야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근무 기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모집 인원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담당직무분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아이돌봄팀</td> <td>아이돌봄 활동가</td> <td>계약에 의함</td> <td>00</td> <td>시간제 및 종일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모집 부서	모집 분야	근무 기간	모집 인원	담당직무분야	아이돌봄팀	아이돌봄 활동가	계약에 의함	00	시간제 및 종일제	4. 모집일정 가. 접수기간: 2019. 1. 21. ~ 2019. 2. 14.(18시까지) 나. 서류전형발표 : 2019. 2. 15. 다. 면접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: 개별 통지				
모집 부서	모집 분야	근무 기간	모집 인원	담당직무분야															
아이돌봄팀	아이돌봄 활동가	계약에 의함	00	시간제 및 종일제															
2. 모집절차 가. 1차 서류전형 나. 2차 면접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 다. 3차 건강진단서 1부(일반검진 외 결핵 등 전염성 질병, B형간염 검사, 정신질환,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 필수) * 건강진단서에 “정신질환자나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”이라는 문구 포함 * 건강진단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제출 라. 80시간 양성교육 이수 마. 실습10시간 이수					5. 접수 장소 및 방법 가. 접수장소 : 과천시건강가정.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. 접수방법 : 평일 근무시간(09:00~18:00)내 방문														
3. 모집대상 가. 다음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					6.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(*붙임) 가. 이력서 1부 나. 자기소개서 1부 다.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라.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1부 마.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 바.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)														
모집자격 및 직무					7. 기타사항 가. 활동수당(기본시급) : 8,400원(아동 1명 기준) 나. 복리후생: 60시간 이상(4대 보험 및 제수당) 다. 교육기간 : 2019. 3. 4. ~ 3.15. (10일) * 교육기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. 지원자의 경우 면접통과자에 한해 양성교육 80시간(본인부담 교육비 20만원 납부)을 이수 후 10시간 실습 필수 마. 양성교육 후 6개월 이내(최소 120시간)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15만원 환급 바.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제한 원칙(지침 69쪽)에 따라 서류접수 시 센터에 사전 고지를 요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사항임 사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*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건강가정.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 (☎ 02-507-0073/02-503-0041)														
- 아이를 사랑하며,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활동 희망자로 과천시 거주자 - 컴퓨터 및 스마트폰으로 업무가 가능한 자 • 영아종일제서비스: 만3개월 이상~만36개월 이하 아동 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• 시간제서비스: 만3개월 이상~만12세 이하 아동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보육시설, 학교, 등·하원, 준비물 보조 등 (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) *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(*붙임) 조치가 불가능한 자는 지원 불가																			

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2. 정신질환자
3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7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의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의 3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의 4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제32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중인 사람
9.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자 기 소 개 서

성 명 :

년 월 일

작 성 자 :

